「학칙」 개정(안)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

「학칙」 개정을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. 02. 11(일) 12:00까지 자유 양식에 따라 기재한 의견을 학사운영처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학사운영처 학사운영팀
- 이메일(haksa@konyang.ac.kr) / 전화번호 : 041-730-5121

붙임 : 학칙 개정(안) 1부. 끝.

2018년 02월 02일

학 사 운 영 처 장

「학칙」 개정(안)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

❑ 개정 사유

1. 학사경고 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학칙 수정

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

2. 학년승급과 학년수료를 별개로 운영 필요

- 학년별 수요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학년 승급을 불허하였으나 미승급시 자존감 결여 및 재학생들의 학년 승급에 대해 무관심으로 학년승급과 학년수료를 별개로 운영 필요
- 학년승급은 해당 등록학기 이수시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자동 승급하며, 수료학점 이상 취득시 수료증명서 발급 가능

3. 특수교육학부 및 영유아교육학부의 학과제 전환

- **배 경**
  - 학생들의 불편 가중 : 학사 전반에 걸쳐 이중 결재(타 학과 주임교수 서명) 등 행정 절차의 복잡화 및 혼선
  - 입시 홍보 : 학부제 접근 시 학과에 맞는 학생 맞춤형 입시홍보 어려움
    ※ 대외 지표는 학과별로 관리 중에 있으며, 내부적 행정관리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
  - 현재 운영 현황

학부 명	학과 명	입학 정원	통합관리	취 지
특수 교육학부	초등특수교육학과	30	2015. 8. 1.	· 교수의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 한 학생맞춤 지도
	중등특수교육학과	20		
영유아 교육학부	아동보육학과	35	2015.12. 1	· 학생 : 소속학과 과정 + α (복수・연계전공) 확대 ⇨ 학생 역량 강화
	유아교육학과	20		

- **경 과**
  - 2017. 12월 : 학과별 논의 및 의견서 제출 (→ 단과대학)
  - 2018. 1월 : 단과대학 논의 및 학과제 전환 요청 (→ 기획처)
  - 2018. 1월 : 학처장회의 의견수렴(01.17) 및 결재 완료
- **내 용**
  - 학과제 전환 운영을 통한 학과별 경쟁력 확보

• 공동 교육과정, 교육실습 및 학생 맞춤 지도 등 협력체계 유지

❑ 주요 내용

1. 학사경고 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학칙 수정

2. 학년승급과 학년수료를 별개로 운영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

- 학년승급은 해당 등록학기 이수시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자동 승급한다는 규정 신설

3. 특수교육학부 및 영유아교육학부의 학과제 전환으로 [별표 1] 개정

❑ 신구대조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 38조의 2(학사경고) ① 매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.0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가하고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</td><td>제 38조의 2(학사경고) ① 매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.0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가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.</td></tr>
<tr><td>제 39조(수료학점인정)
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
<table>
<tr><td>학년별 \ 졸업학점</td><td>130 이상</td><td>140 이상</td><td colspan="2">240이상(의학과)</td></tr>
<tr><td>제 1학년</td><td>33</td><td>35</td><td>의학 1년(예과1학년)</td><td>40</td></tr>
<tr><td>제 2학년</td><td>65</td><td>70</td><td>의학 2년(예과2학년)</td><td>80</td></tr>
<tr><td>제 3학년</td><td>98</td><td>105</td><td>의학 3년(본과1학년)</td><td>120</td></tr>
<tr><td>제 4학년</td><td>130</td><td>140</td><td>의학 4년(본과2학년)</td><td>160</td></tr>
<tr><td>제 5학년</td><td></td><td></td><td>의학 5년(본과3학년)</td><td>200</td></tr>
<tr><td>제 6학년</td><td></td><td></td><td>의학 6년(본과 학년)</td><td>240</td></tr>
</table>
②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전항의 학년별 상한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년수료로 인정한다.
<신 설></td><td>제 39조(수료학점인정)
① <생 략>
②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전항의 학년별 상한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③ 학년승급은 해당 등록학기 이수시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자동 승급한다.</td></tr>
<tr><td>(별표 1)
1. 2018~2019학년도 모집단위
<table>
<tr><td rowspan="2">단과대학</td><td rowspan="2">모집단위(학부·과)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</td></tr>
<tr><td>창의융합캠퍼</td><td>메디컬캠퍼</td></tr>
</table></td><td>(별표 1)
1. 2018~2019학년도 모집단위
<table>
<tr><td rowspan="2">단과대학</td><td rowspan="2">모집단위(학부·과)</td><td colspan="2">입학정원</td></tr>
<tr><td>창의융합캠퍼</td><td>메디컬캠퍼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스</td><td>스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재활
복지
교육
대학</td><td rowspan="2">영유아교육
학부</td><td>아동보육학과</td><td>35</td><td></td></tr>
<tr><td>유아교육과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특수교육
학부</td><td>초등특수교육과</td><td>30</td><td></td></tr>
<tr><td>중등특수교육과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신 설></td>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스</td><td>스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재활
복지
교육
대학</td><td>아동보육학과</td><td>35</td><td></td></tr>
<tr><td>유아교육과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tr><td>초등특수교육과</td><td>30</td><td></td></tr>
<tr><td>중등특수교육과</td><td>20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부 칙
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td></tr>
</table>